

의왕시 시민정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9.04.12.]

(제정) 2014.09.12 훈령 제286호

(일부개정) 2017.04.21 훈령 제302호

(전부개정) 2019.04.12 훈령 제313호

관리책임부서 : 기획예산담당관

연락처 : 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 및 주요정책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확보와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및 정책 제안 수렴을 위하여 의왕시 시민정책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의왕시 시민정책단(이하 "시민정책단"이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약사항에 대한 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
2. 공약사항과 관련한 자문 및 건의
3.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및 정책 제안
4. 그 밖에 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민정책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시민정책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하되, 시민정책단의 단원(이하 "단원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공약사항의 각 분야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
2. 시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
- ② 단원 위촉시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단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.
- ④ 시민정책단에는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공약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① 위촉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해촉)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
2. 품위손상, 두 번 이상 회의 불참 등 시민정책단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
4. 그 밖에 시민정책단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

제6조(단장 등의 직무) ① 시민정책단의 단장은 시민정책단을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.

-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,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간사는 시민정책단의 사무를 처리한다.

제7조(시민정책단 운영) ① 시장은 공약사항의 평가를 위한 회의와 시정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 및 정책 제안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
- ② 시민정책단의 회의는 재적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 간사는 회의일시,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확정하여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단원에게 통보해야 한다.
- ④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민정책단 활동에 필요한 교육,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제8조(평가방법) ① 시민정책단은 공약에 대하여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할 수 있다.

② 시민정책단은 공약사항의 이행정도를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한다.

1. 각 공약사항의 적정성
2. 사업별 추진정도와 사업비 확보
3. 계획대비 집행비율 등

③ 시민정책단은 주요정책 발굴 및 공약사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시민정책단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

제9조(회의결과의 공개 등) ① 시장은 시민정책단 운영결과 및 공약 이행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민정책단이 제출한 주요정책 및 공약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등의 지급) 시민정책단의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시민정책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민정책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훈령 제302호, 2017.4.21>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훈령 제313호, 2019.4.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종전 단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「의왕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제4조에 따라 시민평가단원으로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